

제2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8. 2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 8월 28일
전문위원 정우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55
- 나. 제안자: 최동철 의원 외 10명
- 다. 제안일자: 2019년 8월 9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8월 21일

2. 제정이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교육·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안 제5조)
- 라.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안 제6조)
- 마. 안전교육 실시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가족정책과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9. 8. 14. ~ 2019. 8. 19.) 결과: 의견 없음
 - 2) 전문 및 관계법령: 붙임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지원·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해 지원·교육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주요 내용

- 1)[안 제1~2조] 상위법 명시 및 용어 정의
- 2)[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 통학차량의 안전 교육 및 홍보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운영

3)[안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설정
-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

4)[안 제6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

5)[안 제7조]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시,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강서구에는 2019년 8월 현재 총 418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크고 작은 어린이 집(통학차량 포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